

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2월 17일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제안경위

- 지난 11월 개장한 동부 및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이용시민들이 주간 이용 시작 시간을 현행 9시부터 6시로 3시간 앞당길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동부·남부·강서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주간 운영 시간 확대 조정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주간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편의 및 사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동부·남부·강서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 관련 주간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제4조제1항제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
- 나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09:00”을 “06: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